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18 선고 2023가합2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3. 6. 23.

판결 선고 2023. 8. 1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12,025,20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25,2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842,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C은 D 주식회사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C과 남매 사이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은 D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2018. 7. 3.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11,968,000원에 대한 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1,968,000	445,865	12,413,865
------------	---------	------------

2) D 주식회사는 2018. 7. 3. E 주식회사에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E 주식회사는 2018. 11. 16.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39155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3,418,932원 및 그 중 11,968,000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3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이라 한다).

다. C의 재산 처분행위 등

1) C은 2018. 3. 19.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11. 10.자로 채권최고액 56,28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8. 3. 23. 말소되었다.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2018. 4.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직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5,942,698원(=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 13,418,932원 + 원금 11,968,000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423,7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C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이 전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보전채권의 원금이 11,968,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중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3. 19.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가입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중 2018. 3. 19.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2018. 1. 3. 발생한 10,000,000원에 대한 채권이 인정될 뿐이고, 위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이 2018. 3. 19.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한 부분만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적극재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되고, C이 2018.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65,0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그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41,502,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은 23,498,000원(= 65,000,000원 - 41,502,000원)이 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포항시 북구 H, I호의 임차인으로서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 합계는 43,498,000원(= 23,498,000원 + 20,000,000원)이 된다.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는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결국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43,498,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2) 소극재산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3.

19. 당시 소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0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은행에 대하여 41,502,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

D 주식회사	2018. 1. 3.	-	10,000,000원
주식회사 J	2018. 1. 20.	-	2,143,000원
주식회사 J	2018. 1. 20.	-	15,357,000원
K 주식회사	2017. 7. 31.	2018. 3. 12.	5,008,000원
합계			32,508,000원

다) 소결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의사 가) C의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점, ③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한 달만인 2018. 4. 30.경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사해의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과 남매 사이인 점, ② C은 2017. 5. 10.경부터 포항시 북구 L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였는데 2017. 11. 15.경 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③ C이 위 지진의 영향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피고도 C의 그 당시 경제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양수금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13,418,932원 및 그 중 11,968,000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양수금 소송의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국한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1.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5,205원(= 10,000,000원 × 616일/365일 × 12%, 원 미만 버림)의 합계 12,025,205원(= 10,000,000원 + 2,025,205원)이 된다. 위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부분의 가액인 23,498,000원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12,025,20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025,20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상윤

판사김재경

판사강민기

별지